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인 쇄 2007년 8월 5일
발 행 2007년 8월 10일
발행인 이 경 태
발행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주)천세: 02-2272-272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 16-375호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113-7 94320
978-89-322-2112-0(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정지원·박혜리·여지나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양국간 통상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으로, 한·중 FTA 협상에서 반덤핑 관련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 및 중국의 반덤핑제도를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한·중 FTA 협상 논제 중 반덤핑제도 부문의 예상 쟁점을 제시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 골격을 수용하여 내용을 크게 보완했으나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한국 및 중국의 반덤핑규정을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한 결과, 세 규정 모두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는 양국의 반덤핑규정 및 WTO 반덤핑협정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9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2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12
가. 현황	12
나. 사례	18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21
가. 현황	21
나. 사례	28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31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33
1. 한국의 반덤핑제도	33
가. 개요	33
나. 관련 개념	34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35
2. 중국의 반덤핑제도	44
가. 개요	44
나. 관련 개념	45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47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54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54
가. 개념의 정의 관련	55
나. 조사절차 관련	57
다. 사법심사제도	59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61
가. 국내산업의 범위	61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63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64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65
마. 재심	65
바. 보복조치	66
.....	
제5장. 결론	67
.....	
참고문헌	71
.....	
부록	73
.....	
Executive Summary	127
.....	

표 차례

표 2-1. 한국의 대상국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12
표 2-2.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13
표 2-3.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규제 현황	13
표 2-4. 중국의 대상국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21
표 2-5. 중국의 대한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22
표 2-6.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22
표 3-1. 본조사의 검토사항	38
표 3-2. 산업피해 분석지표	39
표 3-3.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입증	40
표 4-1.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62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산 전기면도기 수입추이	16
그림 2-2.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수입추이	17
그림 2-3.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수입추이	18
그림 2-4. 한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 대중국 수출추이	26
그림 2-5.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 대중국 수출추이	27
그림 2-6. 한국산 클로로포름 대중국 수출추이	28
그림 3-1. 한국의 덤핑방지관세조사 절차	43
그림 3-2. 중국의 반덤핑조사 절차	53

제1장

서론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어 지난 2006년 11월에 열린 APEC 각료 회의에서 양국의 통상장관은 2007년 1년간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하였다.

2006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약 1,180억 달러로 1992년 수교 이후 19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2위 수입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수입국이다. 양국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편으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컴퓨터, 의류 등 주로 제조업 완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세를 보여 2005년에는 233억 달러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한국의 지속적인 대중 무역수지 흑자 증가는 양국간 통상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듯하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

상국으로, 중국은 한국상품에 대하여 집중적인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trade remedy)제도다. 1903년 캐나다가 처음으로 반덤핑법을 입법한 후 호주, 남아프리카, 미국 등이 차례로 반덤핑제도를 입법화했으며, 각국이 운용하고 있던 반덤핑법을 모델로 1947년 GATT 회의에서 덤핑 규제를 위한 최초의 국제 반덤핑규정(GATT 1947 제6조)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GATT 1947 제6조는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등 매우 모호하여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자의적으로 남용하였다. 이에 GATT 제6차 다자간 협상인 케네디라운드(1962~67)에서 각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제도 운용절차를 제한하기 위한 「GATT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이 제정되었고 도쿄라운드(1979)에서 보완·개정되어 1995년 WTO 출범 이전까지 적용되었다.

현 반덤핑협정은 1994년 UR 협상 결과로 출범한 WTO 체제와 함께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기존 규정의 모호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진전이 있었다. 종전 GATT 체제하의 반덤핑규정과 달리 현 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 적용됨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반덤핑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1963년 ‘부당염매방지관세’라는 명칭으로 반덤핑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반덤핑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게 된 것은 1986년 GATT 반덤핑협정에 정식 가입하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국내 관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보완한 이후이다. 한국은 1986년 4월 15일 최초로 일본 및 대만산 D.C.P.와 일본산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그리고 홍콩산 알긴산 소다(alginic acid)의 3개 품목에 대해 덤핑 제소를 했으며, 최초의 반덤핑관

세 부과품목은 1991년의 미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polyacetal)수지로, 4%의 반덤핑관세를 2년 동안 부과하였다. 2006년 중반까지 총 94건의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반덤핑관세 부과건수는 32건이며, 현재 20개 품목이 반덤핑조치 중에 있다. 한편 WTO 출범 이래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 건수는 총 132건이며 이 중 중국에 의한 조치 건수는 17건으로 인도의 2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은 1994년 대외무역법에서 최초로 반덤핑을 포함한 무역구제 개념을 입법화하였고, 이후 1997년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라는 무역구제 전문 입법을 제정함으로써 반덤핑조사 개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처음 개시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6년 말까지 발동한 반덤핑규제 건수는 총 47건이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 확대에 따라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덤핑피소국으로 전 세계의 대중(對中) 반덤핑조치 건수는 총 353건이다. 이 중 한국이 내린 조치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FTA 협상에 앞서 양국간 반덤핑분야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본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먼저 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및 양국의 반덤핑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규제가 증가한 원인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와 담당기관, 반덤핑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과 한국 및 중국의 반덤핑제도를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한·중 FTA 협상 반덤핑분야의 예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장은 결론으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한·중 FTA 협상 반덤핑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한국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총 94건의 반덤핑제조를 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반덤핑제조 건수는 37건(재심 포함)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반덤핑제조 대상국이며 일본은 33건, EU는 22건을 기록하고 있다(표 2-1 참고).

표 2-1. 한국의 대상국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구 분	중국	일본	EU	미국	대만	기타국
반덤핑제조 건수 (1987~2006년)	37	33	22	21	9	45

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제조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국가별 제조 건수의 합은 총 반덤핑 제조 건수보다 많음.

자료: 무역위원회(2007).

對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를 살펴보면 화학부문에 대한 조사 신청이 18건, 기계, 전자제품에 대한 조사 신청이 8건 등으로 화학, 기계, 전자 부문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2-2).

표 2-2.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구 분	화학	기계 전자	종이 목재	유리 도자기	섬유	제철 금속	기타	계
중 국	18	8	3	2	1	1	4	37

주: 2006년 말 현재.
자료: 무역위원회(2007).

총 37건의 대중국 반덤핑조사 건수 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었고 9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이다(표 2-3).

표 2-3. 한국의 대중국 반덤핑규제 현황

번호	품목	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관세율)	재심여부	현재
1	H산	중국 일본 인도	1992. 8. 6	-	1992. 12. 15	신청철회	-	-
2	정제인산	중국	1992. 8. 6	1992. 10. 5	1993. 1. 28	40.46~ 54.28% (3년간)	재심: 2년간 18.66~ 57.55%	종료
3	소다회	중국	1993. 2. 26	1993. 5. 26	1993. 11. 17	66.11% (3년간)	1차 재심 (1996): 3년간 23.43% 2차 재심 (1999): 2년간 가격약속/25. 61~26.47%	종료

표 2-3. 계속

번호	품목	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관세율)	재심여부	현재
4	액체 가성소다	미국 중국 벨기에 프랑스	1993. 5. 3	1993. 9. 9	1994. 12. 9	피해부정판정	-	-
5	아연괴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1994. 12. 20	1995. 3. 31	1995. 6. 23	피해부정판정	-	-
6	염화코린	미국 중국	1996. 3. 29	1996. 7. 9	1996. 10. 9	33.83~49.6% (5년간)	-	종료
7	전기 면도기	네덜란드 독일 중국 일본	1996. 7. 9	1996. 11. 14	1997. 3. 14	23.14~45.68% (5년간)	-	종료
8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중국	1997. 2. 27	1997. 5. 30	1997. 9. 26	32.84% (5년간)	1차 재심: 72.41~ 100.1% 2차 재심: 36.42% 3차재심: 36.42~ 65.31%	종료
9	푸르푸릴 알코올	중국	1997. 4. 30	1997. 9. 5	1997. 12. 23	신청철회		-
10	전기 다리미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1997. 10. 15	1998. 2. 20	1998. 6. 17	10.43~43.77% (3년간)	재심: 신청철회	종료
11	페로실리 코망간 (재심)	중국	2002. 11. 14	-	2003. 10. 11	17.95~24.68% (5년간)	1차 재심: 5년간 15.66%	규제 중
12	알칼리망 간전전지 (재심)	중국	2002. 12. 5	-	2003. 10. 11	26.7% (3년간) 가격약속	1차 재심: 신규공급자 추가 2차 재심: 3년간 24.97%	3차 재심 중

표 2-3. 계속

번호	품목	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관세율)	재심여부	현재
13	일반용 자전거 및 부품	중국	2000. 9. 27	-	-	기각판정	-	-
14	셀프 복사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2001. 5. 14	-	-	신청철회	-	-
15	백시멘트	중국	2002. 1. 23	2002. 6. 27	2002. 10. 24	피해부정판정	-	-
16	정보용지 및 백상지 (원심)	중국	2002. 11. 14	2003. 4. 23	2003. 9. 24	5.50~8.99% (3년간)	-	재심 중
17	규산 나트륨	중국	2003. 6. 25		2003. 11. 19	기각판정	-	-
18	차이황산 소다 (원심)	중국	2003. 7. 23	2003. 12. 15	2004. 5. 12	11.78~21.07%	-	규제 중
19	염화콜린 (원심)	중국	2003. 12. 3	2004. 4. 21	2004. 9. 22	10.28~27.55% (5년간)	-	규제 중
20	아나타제 형이산화 티타늄 (원심)	중국	2004. 4. 21	2004. 8. 25	2005. 1. 26	4.82~23.08% (3년간)	-	규제 중
21	도자기질 타일	중국	2005. 6. 22	2005. 11. 23	2006. 4. 17	2.76~29.41% (5년간)	-	규제 중
22	폴리에스 테르장섬 유연신가 공사	중국	2005. 11. 11	2006. 4. 17	2006. 9. 18	6.53~18.66% (3년간)	-	규제 중
23	폴리비닐 알코올	중국	2006. 2. 10	2006. 6. 26	2006. 11. 20	11.1~35.17% (3년간)	-	규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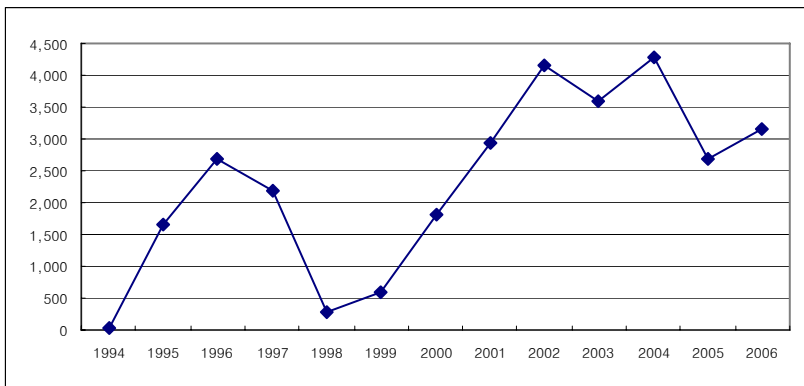
주: 재심은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재심여부로 포함하여 표기하였음.
자료: 무역위원회(2007).

반덤핑조치 품목은 화학, 기계, 전자가 대부분이며 이 품목들은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몇 가지 주요 품목의 반덤핑조치 이후의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면도기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995년에는 약 166만 달러, 1996년에는 269만 달러를 기록하며 급증하였다(그림 2-1). 이에 따라 한국은 1996년 7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1997년 3월 최종판정에서 향후 5년간 23.14~45.6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에는 수입량이 219만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고 다음 해인 1998년에는 28만 달러로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유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종판정 적용기간인 2001년까지 대중국 전기면도기의 수입은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조치가 끝나는 2001년 이후에는 대중국 전기면도기 수입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 그림 2-1. 중국산 전기면도기 수입추이 ■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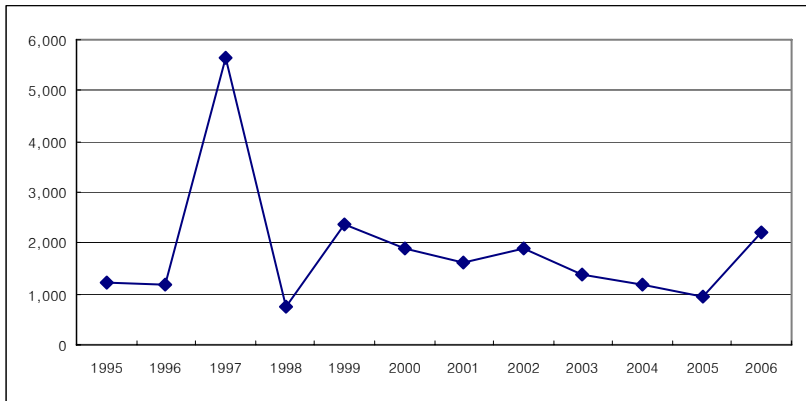
중국으로부터의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수입은 1995년 122만 달러, 1996년 117달러로 감소하는 듯하였으나 1997년에는 564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이

급증하였다(그림 2-2). 이에 따라 1997년 2월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시작되었고 1997년 9월 향후 5년간 32.8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 조치 이듬해인 1998년에는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의 수입이 76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반덤핑관세 부과효과가 두드러졌으나 1999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이후 조치기간 동안 2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입은 1999년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00년 2,262만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그림 2-3). 이에 한국은 2002년 11월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2003년 10월 11일 향후 5년간 17.95~24.6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하였다. 반덤핑 최종판정 다음 해인 2004년에도 페로실리코망간 수입액의 급증세는 계속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최종판결조치 적용기간인 현재까지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그림 2-2.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수입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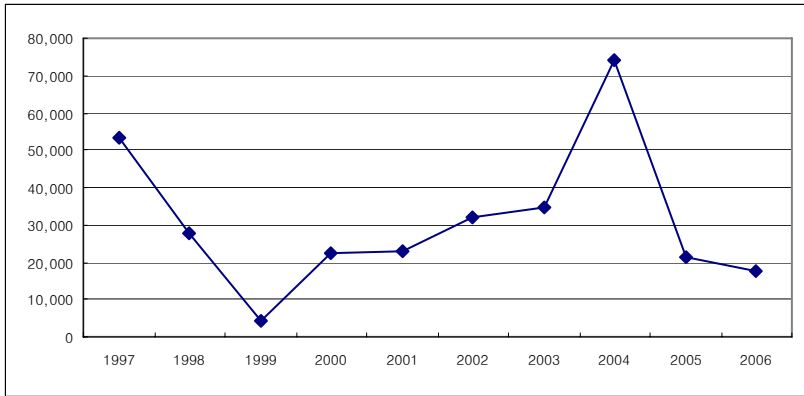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그림 2-3.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수입추이 ■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사례¹⁾

1) 소다회(재심)

국내 소다회 생산업체인 (주)동양화학공업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이 종료될 경우, 중국산 소다회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소다회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존 반덤핑조치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사 요청서를 1999년 11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본 재심 요청은 1993년 원심과 1996년도 제1차 재심을 거쳐 다시 재심을 요청한 사례이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하고 조치 연장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였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 수출업자의 가격약속을 수락하고 다른 수출업자에게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며²⁾ 부과기간은 2년으로 결정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사례들은 무역위원회가 계간으로 발표하는 『무역구제』와 조사심결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재심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일반적으로 3년으로 결정하는데, 본 건에서는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3년이 아닌 2년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심에서 피신청인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1993년 원심에서 3년간, 그리고 1997년 재심에서 3년간 부과되었는데 또다시 조치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주)동양화학공업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주장을 하였다. 무역위원회의 2년 결정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반덤핑조치가 국내산업의 무한정한 보호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백시멘트

2001년 12월 국내 백시멘트 생산업체인 (주)유니온은 중국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³⁾ 예비조사에서 덤핑률이 1.1%로 미소마진 이하인 티안시에 대한 본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미소마진으로 인한 조사종결 여부가 공급자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공급국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법 해석상 공급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티안시에 대해서만 본조사를 종결한다. 이러한 경우 조사대상업체의 서면답변서 오류 및 허위사실에 대한 정확성 검증이 결여된 채 조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2) 가격약속업체는 중국화공건설총공사, 중화화복진출구공사, 칭다오하이완사의 3개 업체이고 이들이 제의한 통당 141달러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수락하였다. 텐진사에 대하여는 26.47%, 기타 수출자에 대해서는 25.6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가격약속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2년이다.

3)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이 2% 미만인 경우 본조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소마진판정과 상관없이 본조사를 수행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예비조사에서 미소마진 이하인 경우에도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부정판정일 경우에만 조사를 종결한다. 또한 EU는 공급국 전체가 미소마진일 경우에만 조사를 종결한다.

3) 액체가성소다

한국소다공업협회는 중국, 미국, 벨기에 및 프랑스산 액체가성소다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피해 우려도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1994년 4월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된 액체가성소다로 국내 판매가격이 상당히 인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본조사에서는 산업피해부정 최종판정을 내렸다. 즉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상태를 종합검토한 결과 국내산업의 생산 및 판매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가동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으며, 비록 국내산업의 경영수익은 악화되었지만 그 원인은 덤핑수입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판매단가 하락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시 무역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피해부정 판정을 주장함에 따라 본건은 종료되었으나 재고물량 증가, 국산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감소 등의 측면에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중국이 2006년 말까지 발동한 반덤핑규제 건수는 총 47건이며, 이 중 대한민국 반덤핑제소 건수는 28건(재심 포함)으로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이다(표 2-4).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제소 건수는 2002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제소 건수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의 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석유화학 등의 부문에서 중국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05년에는 제소 건수가 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2-4. 중국의 대상국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

(단위: 건)

대상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러시아
반덤핑제소 건수	28	27	21	12	11	9

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제소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국가별 제소 건수의 합은 총 반덤핑 제소 건수보다 많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에는 신규 반덤핑제소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기존 규제 건에 대한 재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제소 건수는 2002년 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5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재심 건수는 2005년에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는 4건으로 원심 건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한민국 신규 제소 건수는 2006년 1건에 불과하나 재심 건수는 3건으로 오히려 원심 건수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섬유류가 2건, 철강과 전기·전자가 각각 1건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규제는 주로 소재산업에 집중되어 있다(표 2-5).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의 전 품목이 반덤핑제소를 당했다. 철강의 경우 건수로는 1건이나 금액 기준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이므로 반덤핑규제로 인한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중국의 對한국 산업별 반덤핑조사 신청 분포(2006년 말 현재)

(단위: 건)						
구 분	화학	섬유류	철강	전기전자	기타	총계
한 국	15	2	1	1	2	21

자료: 무역위원회(2007).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제기한 28건의 반덤핑제소 건수 중 현재 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 중에 있는 건수는 21건이며 7건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조사 중지되었다(표 2-6).

표 2-6.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번호	품 목	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관세율)	재심여부	현재
1	신문용지	한국 미국 캐나다	1997. 12. 10	1998. 7. 1	1999. 6. 3	9~55%	1999. 6. 3 (일몰재심 개시, 2003.7.4)	규제 중
2	폴리에스테르 필름	한국	1999. 4. 16	1999. 4. 16	2000. 8. 25	0~46%	2000. 8. 25 (가중재심 개시, 2002.1.4)	규제 중
3	스테인리스 스틸강관	한국 일본	1999. 6. 17	2000. 4. 13	2000. 12. 18	57~57%	(일몰재심, 2004. 12. 28)	규제 중
4	이염화메탄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2000. 12. 20	2001. 8. 16	2002. 4. 11	7~28%	-	규제 중

표 2-6. 계속

번호	품 목	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관세율)	재심여부	현재
5	폴리스틸렌	한국 일본 태국	2001. 2. 9	-	무피해 종결	덤핑피해 없음	-	-
6	라이신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2001. 6. 14	-	무피해 종결	덤핑피해 없음	-	-
7	폴리 에스터칩	한국	2001. 8. 3	2002. 10. 29	2003. 2. 3	5~52% 한국 효성그룹에 서 수입되는 제품 관세는 26%로 조정	2003. 2. 3 (가중재심 개시, 2005. 4. 25)	규제 중
8	폴리에스터 단섬유	한국	2001. 8. 3	2002. 10. 22	2003. 2. 8	2~48%	-	규제 중
9	아크릴산 에스테르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001. 10. 10	2002. 12. 05	2003. 4. 10	2~20%	2003. 4. 10	규제 중
10	아트지 (동판지)	한국 미국 일본	2002. 2. 6	2002. 11. 26	2003. 8. 6	4~51%	-	규제 중
11	무수프탈산 (P.A)	한국 일본 인도	2002. 3. 6	2003. 1. 7	2003. 9. 2	-	-	규제 중
12	합성고무 (SBR)	한국 일본 러시아	2002. 3. 19	2003. 4. 16	2003. 9. 9	14~38% (재심 진행 중)	2003. 9. 9 (가중재심 개시, 2004. 12. 13)	규제 중, 가중재심
13	냉연강판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2002. 3. 23	2003. 5. 20	2003. 9. 23	0~40%	2003. 9. 24 (재심 최종판정 2004. 9. 10)	규제 중단 (2004. 9)

표 2-6. 계속

번호	품 목	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관세율)	재심여부	현재
14	폴리염화비닐 (PVC)	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 미국	2002. 3. 29	2003. 5. 12	2003. 9. 29	6~76%	-	규제 중
15	TDI	한국 일본 미국	2002. 5. 22	2003. 6. 10	2003. 11. 22	3~5% (재심 진행 중)	2003. 11. 22 (가중재심 개시, 2005. 2. 3)	규제 중, 가중재심
16	페놀	한국 일본 미국 대만	2002. 8. 1	2003. 6. 9	2004. 2. 1	5~16%	수출상 재심 개시 (2005. 12. 5)	규제 중, 수출상 재심
17	MDI	한국 일본	2002. 9. 20	-	조사 종결 (2003. 11. 28)	조사 중지	-	
18	클로로포름	한국 EU 미국 인도	2003. 5. 30	2004. 4. 8	2004. 11. 30	96~96%	-	규제 중
19	광섬유	한국 미국 일본	2003. 7. 1	2004. 6. 16	2005. 1. 1	7~46%	-	규제 중
2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2003. 12. 17	2004. 8. 3	2005. 6. 17	68~184%	-	규제 중
21	골판지	한국 미국 태국 대만	2004. 3. 31	2005. 5. 31	2005. 9. 30	11~65.20%	-	규제 종결 (2006. 1. 9)

표 2-6. 계속

번호	품 목	대상국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치내용 (관세율)	재심여부	현재
22	비스페놀A	한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2004. 5. 12	-	-	조사중지	-	-
23	EPDM	한국 네덜란드 미국	2004. 8. 10	-	2006. 2. 9	조사중지	-	-
24	IMP, GMP, IMP+GMP (식품첨가제)	한국 일본	2004. 11. 12	-	2006. 5. 12	25~119%	-	규제 중
25	ECH	러시아 한국 미국 일본	2004. 12. 28	-	2006. 6. 28	4.30~71.50%	-	규제 중
26	스판텍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2005. 4. 13	-	2006. 10. 13	0~61%	-	규제 중
27	옥탄올	한국 EU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2005. 9. 15	-	-	덤핑피해 없음	-	조사 중지
28	비스페놀A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2006. 8. 30	-	-	조사 개시	-	조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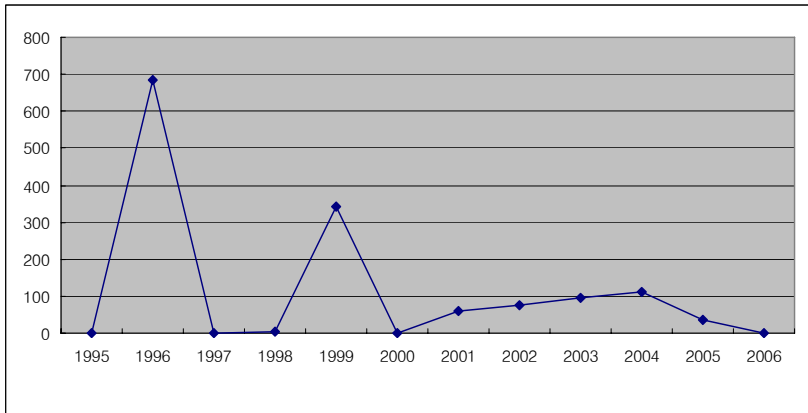
자료: 중국무역구제신식망,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반덤핑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높은 반덤핑관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중국 측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1996년 68만 달러를 기록한 후 1997년과 1998년에는 저조하다가 1999년 34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2-4). 이에 중국은 1999년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에 대해 반덤핑제조를 하였고 2000년 12월 향후 5년간 5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의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의 대중국 수출은 1999년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00달러로 수입이 급감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 수입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중국은 2005년 4월 일몰재심을 거쳐 현재까지 규제 중이다.

■ 그림 2-4. 한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 대중국 수출추이 ■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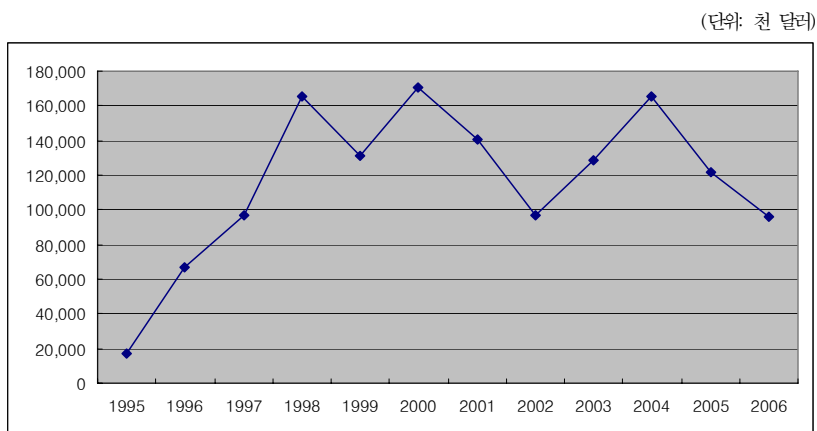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폴리염화비닐(PVC)의 대중국 수출은 1990년대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0년에는 1억 7,000만 달러를, 2001년에는 1억 4,000만 달러를 기

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폴리염화비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하였고 2002년 3월 조사가 개시되어 2003년 9월 6~7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조사 개시 이후 폴리염화비닐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2002년 대중국 수출액이 9,668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04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등 뚜렷한 증감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 그림 2-5.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 대중국 수출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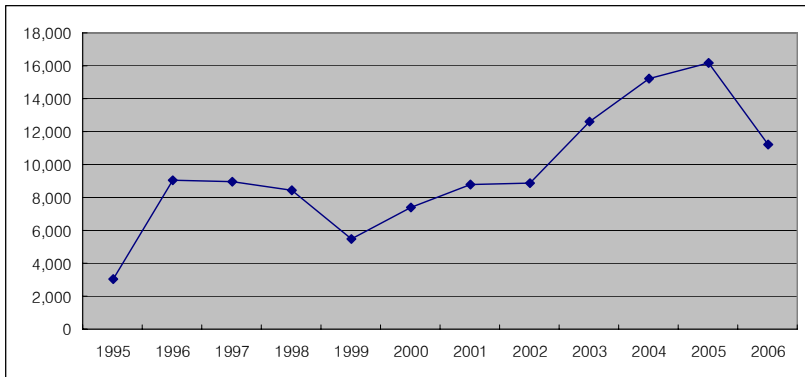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클로로포름의 대중국 수출은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완전한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였으나 2003년 1,260만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 중국은 클로로포름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고 2004년 11월에는 9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 1,120만 달러를 기록하며 다소 감소하였다.

■ 그림 2-6. 한국산 클로로포름 대중국 수출추이 ■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사례⁴⁾

1) 신문용지

1997년 11월 지린제지유한공사(吉林造纸有限公司), 광저우제지유한공사 등 9개 신문용지 제조업체는 미국, 캐나다, 한국의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을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제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졌으며 최종판정에서 9~78%에 이르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이유로는 신문용지 수입량의 증가추세와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국내 생산량 및 가격 하락, 재고의 급증, 공장가동률 하락, 실업률 증가, 수출국에서의 거대 생산능력 등이 제시되었다. 덤핑수입과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증명에서는, 중국 신문용지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기타 국가로부터의 신문용지 수입, 수요변화, 동남아

4) 본 사례는 중국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과 수출입 공평무역국에서 운영하는 중국 무역구제 정보망 (<http://www.cacs.gov.cn>)의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금융위기 등 기타 요인들은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밝히고 미국, 캐나다, 한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야기한 주요한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됨을 증명하였다.

본 건은 중국이 최초로 반덤핑제도를 사용하고 조치를 취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본 건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다루어진 사건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 또는 산업이 법률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빈번한 반덤핑규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중국도 자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위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1999년 5월 중국의 태원강철(太原鋼鐵集團有限公司), 상해포동강철(上海浦東鋼鐵集團有限公司), 섬서정밀금속(陝西精密金屬集團有限責任公司) 등은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제출하였다. 예비조사는 일본과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에의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하며 덤핑수입과 실질적인 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고 잠정반덤핑조치를 내렸다. 본조사 결과, 17~58%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종판정 발표 전에 일본의 가와사키제철주식회사와 한국의 포항제철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의 기업이 가격약속 협의를 체결함에 따라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본 건의 제기는 세계 양대 철강생산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과 한국 정부 및 기업은 대표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방중(訪中)하여 협상과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본 건의 응소기업 수는 전무후무하게 많았다. 또한 응소기업과 가격약속 협의를 체결한 것은 본 건이 최초이다.

3) 폴리에스테르 필름

1999년 4월 포산두방홍지박막유한공사(佛山杜邦鴻基薄膜有限公司), 상하이 화공창유한공사(上海化工厂有限公司) 등은 국내 폴리에스테르 필름산업 대표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였다. 한국 피소기업은 선경(SKC), (주)제일합섬, 코오롱 등이다. 본 건은 중국 석유화학산업 최초의 반덤핑조사였다.

한국산 덤핑수입에 따라 국내산업은 가격을 낮춰 기본적인 시장을 유지하려 하였는데, 제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한 업체는 극심한 부채로 인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본조사에서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판정하고 13~4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4) 최근 사례

중국 상무부는 2003년 9월 한국, 대만, 러시아 등이 수출한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덤핑마진율은 국별로 0%에서 55%로 산정되었는데 잠정관세 부과와 유예처럼 최종판정에서도 관세부과가 유예되었다. 중국정부가 관세부과를 유예한 까닭은 현재 긴급수입제한 규제 중인 철강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까지 부과할 경우 중국내 철강 수요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중국 상무부가 내린 무수프탈산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최종 덤핑마진율은 0%에서 13%로 14~33%였던 예비판정률에서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에는 각각 63%와 13%의 예비판정 마진율을 그대로 부과하였다. 이는 한국업체들이 중국의 덤핑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최근 중국 조사당국이 반덤핑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덤핑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

이다.

다.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규제 원인

한국과 중국의 양국간 교역규모는 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중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약 35%와 21%를 기록하여 수출이 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말 대중국 수출은 446억 달러로 한국은 중국의 제3위 수출국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70%는 중간재와 부품소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광학기기,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이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중국의 대한(對韓) 반덤핑규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중국의존도는 1998년 14%에서 2006년에는 130%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양국간 교역불균형 문제를 최대 통상현안으로 삼고 한국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반덤핑규제를 통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심운수 2005).

양국간의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도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규제의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영민 2002). 국가 간의 교역에서 상호의존 관계는 지역화계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양국간 지역화계수는 1992년에 1을 넘어섰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3을 초과하여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국간의 교역구조는 한국이 중간재와 부품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제조업 완제품 등을 수입하는 수직분업 구조가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전자부품, 철강,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에서 수평분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對韓 반덤핑규제는 주로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

5) 지역화계수=(X_{ij}/X_i)/(M_j/M_w), X_{ij} :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 X_i : i국의 총수출, M_j : j국의 총수입, M_w : 세계 총수입

다. 박순찬(2004)은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덤핑조사 품목들의 수출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조사대상 품목들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덤핑조사가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이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수출금액은 전체 대중국 총수출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對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와 32%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철강제품의 경우 전세계적인 초과공급 상태로 중국시장에서 원가 미만 판매 등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중국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규제는 자국의 산업육성단계에서 과도기적 조치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갖추어지게 되면 수입에 의존했던 원자재와 부품이 국내산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세워야 하며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대중국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

한 · 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한국은 1963년 관세법 제7조의 2에 ‘부당염매방지관세’라는 이름으로 반덤핑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1983년에는 이 제도의 명칭을 ‘반덤핑방지관세’로 개칭하면서 덤핑의 정의, 조사절차, 반덤핑관세부과절차 등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후 1986년 2월 ‘GATT 반덤핑협정’에 정식으로 가입하였고 1986년 4월 처음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다. 1991년에는 미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하여 최초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1993년 UR 협상 타결로 발효된 WTO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반덤핑 이행협정에도 자동 가입하였다. 반덤핑관세제도의 법적 근거는 ‘GATT 제6조(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의 규정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이다.

한국은 이 협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반덤핑관세법을 개정·보완하였으며 현재 관세법 51조에서 56조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원칙과 잠정조치, 약속 합의, 소급적용, 재심사 및 일몰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결정, 피해조사, 그리고 약속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식 등은 관세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2001년 2월 3일 신규제정)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반덤핑제도 운영기관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이다. 잠정조치 시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약속 수락, 재심사 결정 등 반덤핑제도에 관련한 모든 실무운영 및 최종판정은 무역위원회가 담당하고,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건의하면 관세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재정경제부가 최종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1987년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심의·의결하는 자문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1989년 관계 행정기관의 장(長)에게 건의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이후 1995년 WTO 출범으로 국내시장의 개방화와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반덤핑제도의 이용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담당하던 덤핑률 조사업무를 이관, 무역구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조사·심결 기관이 되었다.

나. 관련 개념

1) 덤핑

관세법 제51조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고,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제3국으로 수

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삼는다.⁶⁾

2) 피해

관세법 제51조에서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실질적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덤핑수입의 물량이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해 뚜렷이 증가되었을 경우, 덤핑수입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를 초래하였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을 경우,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덤핑수출국내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하였을 경우 등이 실질적 피해에 해당한다.⁷⁾

3)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용도, 대체 여부, 소비성향, 유통경로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관세법 제10조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상

6)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정상가격으로 간주할 수 없는 통상거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7) 실질적 피해의 구체적인 지표와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후술한다.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일반 관세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조사 신청

덤핑조사 신청은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입은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 할 수 있다(관세법 제 51조).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덤핑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로서 조사 신청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도 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신청자는 덤핑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2)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 개시 결정이 나면,⁸⁾ 10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과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조사대상기간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무역위원회는 먼저 조사대상물품의 국내 동종물품과 이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대상기간은 조사 신청일이 속한 연도 직전 3년부터 무역위원회의

8)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 신청이 기각된다: ① 신청인의 자격 부적격, ② 덤핑사실, 실질적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미비, ③ 덤핑마진이 2% 미만(최소허용 덤핑마진: de minimis), ④ 대상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수입량의 3% 미만을 보이는 공급국이 2개국 이상일 경우 그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7%이하인 경우(최소허용 수입물량: negligible imports), ⑤ 조사 개시 전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 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예비조사 및 잠정조치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가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이나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경우 필요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인상 약속의 제의를 건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잠정조치란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으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⁹⁾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 후 최소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나 재정경제부 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 등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¹⁰⁾ 약속이 수락되면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며 납부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환급되거나 제공된 담보가 해제된다. 예비조사 결과 덤핑차액, 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사를 종결한다.

9) 이 밖에도 가격인상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 이행에 관한 자료 제출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따라 덤핑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방지를 위한 잠정조치의 적용이 가능하다.

10)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②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③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4) 본조사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의 다음 날부터 본조사에 착수하고 본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사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지실사검증, 공청회 등을 실시한다. 본조사 검토사항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이다(표 3-1).

■ 표 3-1. 본조사의 검토사항 ■

본조사의 검토사항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덤핑물품의 수입사실	· 덤핑률 산정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산업의 범위 ·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우려 ·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 덤핑수입물량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에 따른 영향 · 덤핑수입이 국내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 덤핑수입이 국내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

자료: 무역위원회(2002).

(가) 덤핑조사

덤핑조사는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¹¹⁾을 비교하는 절차로,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공장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비교한다.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서 조정한 뒤 비교하여야 한다. 덤핑마진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1) 덤핑가격: 조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GATT상의 수출가격.

$$\text{덤핑마진}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1)} - \text{조정된 덤핑가격}^{2)}}{\text{과세가격}(CIF)} \times 100$$

주: 1) 조정된 정상가격: 조사대상국에서 통상거래되는 정상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환원한 가격.

2) 조정된 덤핑가격: 조사대상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환원한 가격.

만약 덤핑마진이 덤핑가격의 2% 이하이거나 수입점유율이 각각 3% 미만인 공급국들로부터의 점유율 합계가 동종물품 수입량의 7% 이하일 경우 미소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종결한다.

(나) 피해조사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그런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 지연을 초래하는지를 판정한다.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기간 중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덤핑수입의 물량이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해 뚜렷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수입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를 초래하였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여부(덤핑물품의 가격),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덤핑수출국내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하였는지 여부(덤핑차액의 정도)를 검토한다. 또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산업피해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한다(표 3-2).

■ 표 3-2. 산업피해 분석지표 ■

구분	지표
생산 관련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생산성 등
판매 관련	판매실적, 시장점유율, 재고 등
손익 관련	손익 및 손익률, 제조원가, 손익분기점 분석 등
재무 관련	자산, 자본, 부채, 투자수익, 자금순환 등
일반	고용, 임금 등

자료: 무역위원회(200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우려에 대한 판정시에는 상기 실질적 피해의 검토요소들 이외에도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수입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한국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추가적인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산업이 생산설비를 설치 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영업 개시를 한 경우,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생산설비 설치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영의 안정화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표 3-3.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입증 ■

구분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경우
입증방법	· 상업적 생산 개시를 위한 노력의 실질적인 지연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투자의 축소 및 연기 · 공장의 착공이나 생산설비의 발주 또는 설치 지연	·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 경영성과의 타당성 검토 · 기대 경영성과와 실제 경영성과와의 비교

자료: 무역위원회(2002).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결과 산업피해 긍정판정이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건의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조사 결과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조치를 취한다.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 수입가격을 정하여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덤핑관세를 정률세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덤핑마진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다. 확정된 덤핑마진이 반덤핑관세율인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상률과 덤핑마진을 비교하여 덤핑방지 관세율을 정한다. 이는 GATT 이행규정 제9조 1항을 따른 것으로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목적이 재정수입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있으므로 ‘산업피해구제수준’¹²⁾이 조사된 덤핑률보다 낮으면 그러한 구제수준을 덤핑방지관세율로 하는 것이다.

6) 반덤핑조치 종료 및 재심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나 가격약속은 총리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사의 경우에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로부터 5년 후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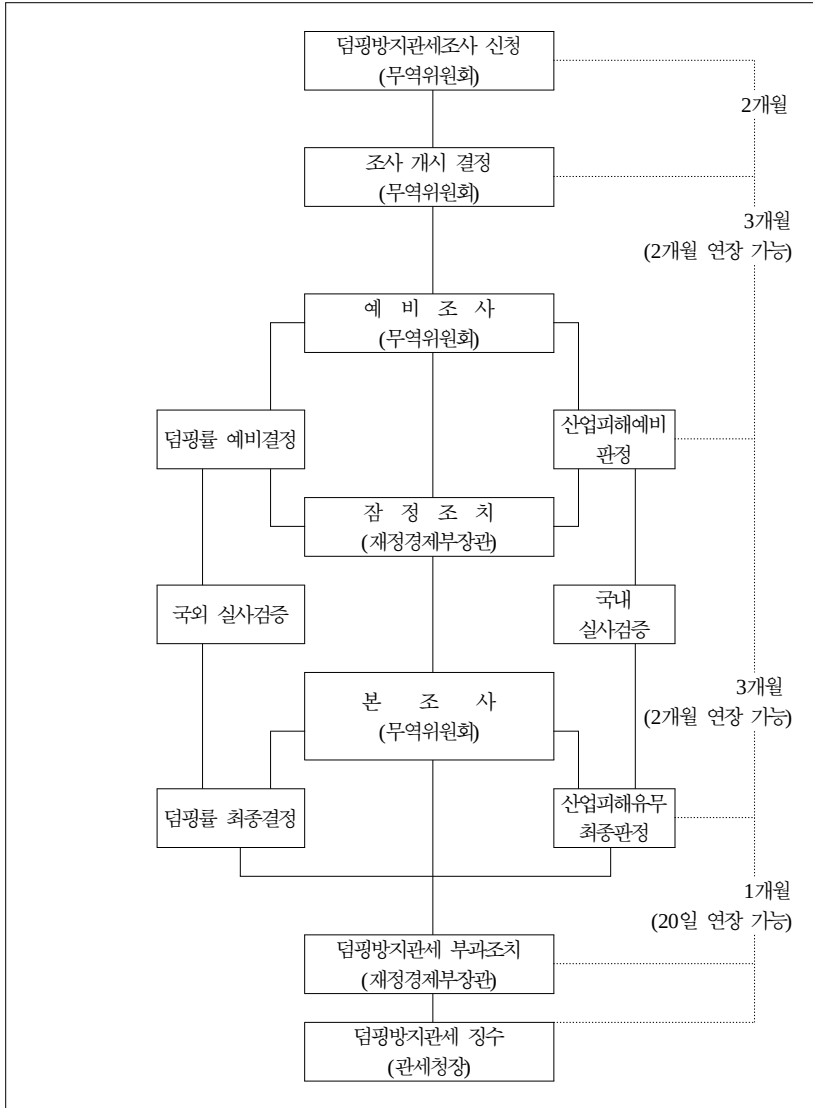
재심은 반덤핑관세부과 확정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관세부과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재심사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부터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가능하다. 재심사 요청요건은 ① 조치(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변동이 발생할 경우(상황변동 재심사), ② 조치의 종료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종료 재심사), ③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환급 재심사)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2) 산업피해구제수준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경우 국내산업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수준, 즉 적정 판매가격 이상으로 덤핑수입품이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인상률을 말한다 (장근호 1999).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료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조치가 만료되면 재심사기간 중 조치의 효력은 지속된다. 재심사는 원심덤핑조사 절차에 준하여 국별, 업체별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반덤핑조치 전후의 수출가격, 수출물량의 변화 및 기타 경제여건 변화추이를 조사한다. 재심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원심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다.

■ 그림 3-1. 한국의 덤핑방지관세조사 절차 ■



자료: 무역위원회(2002).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중국의 대외무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2006년 중국의 교역규모는 세계 3위로 급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對)세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1995년 이후 세계 최대의 반덤핑 피소국이 되었다. 한편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하여 중국내 경쟁이 심화되었고 자국 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수입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덤핑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대외무역법에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개념을 처음 입법화하고, 1997년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반덤핑과 반보조금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 진행과 조치 적용에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으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조례의 내용이 모호하며 WTO 반덤핑협정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01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무원은 반덤핑 관련 규정을 「반덤핑조례」로 새롭게 개정하였는데, 덤핑과 보조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구 조례에서 덤핑과 보조금을 분리하고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골격을 수용하는 등 내용을 크게 보완하였다. 덤핑조사를 담당한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2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11건의 시행규칙¹³⁾을 부령으로 제정

13) 11개 시행규칙: 덤핑 및 덤핑마진 중간재심규칙, 반덤핑 신규수출자 재심규칙, 반덤핑조사질의서규칙, 반덤핑관세환급규칙, 반덤핑가격약속규칙, 반덤핑조사정보통보규칙, 반덤핑조사공청회규칙, 반덤핑조사 현장조사규칙, 반덤핑조사개시규칙, 반덤핑조사공개정보열람규칙, 반덤핑표본조사규칙(이승영 2004).

하고 공포하였다.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도 같은 해 「산업피해조사공정회규칙」과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와 판정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하였다.

200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련 입법권뿐 아니라 관련 시행세칙의 제정과 공포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상무부 출범 이후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와 판정규정」은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으로 개정되었고, 2004년에는 대외무역법¹⁴⁾과 반덤핑조례도 개정됨으로써 반덤핑제도 운영을 위한 법체계를 완성하였다.

나. 관련 개념

1) 덤핑

반덤핑조례 제3조는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제품을 그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을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가치는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 국내시장의 정상거래과정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있을 경우 이 비교 가능한 가격을 의미한다. 만약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을 수출국 국내시장의 정상거래과정에서 판매하지 않았거나 이 동종제품의 가격, 수량에 따라 공정한 비교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이 동종제품을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또는 이 동종제품의 원산국 생산

14) 대외무역법은 총 11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덤핑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제8장 제41조와 제42조이다.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이윤을 추가한 가격을 정상가치로 한다.¹⁵⁾

2) 피해

반덤핑조례 제7조는 피해란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하여 실질적 피해 및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에 대하여 실질적 지연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은 상무부가 담당한다. 그 중 농산물의 덤핑과 관련된 국내산업 피해 조사는 상무부와 농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3) 국내산업 및 동종제품

반덤핑조례 제11조는 국내산업을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총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로¹⁶⁾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조례 제12조는 동종제품이란 덤핑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품이 없을 경우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종제품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품의 물리적 특징, 화학적 성능, 생산설비와 공정, 상품의 용도, 상품의 대체가능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루트, 가격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반덤핑 피해조사규정 제11조).

15)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정상가치로 간주할 수 없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WTO 반덤핑협정은 수출국의 국내시장 소비를 위한 동종제품의 판매가 수입국의 조사대상물품 판매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충분한 수량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단위비용 이하로의 판매 규모가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 수량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격이 합리적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6) 전체 총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란 어떤 물품의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신청인의 생산량이 국내 총생산량의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일 신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 가운데 찬성자의 생산량이 찬성자와 반대자의 생산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0%를 초과하고 또한 국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WTO 반덤핑협정과 한국의 법규는 주요 부분의 정량적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반덤핑조례 제2조는 수입물품이 덤핑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들어와 이미 확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조사 신청

조사에는 신청에 의한 조사와 직권에 의한 조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상무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거나, 상무부 자체적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신청에 의한 조사의 경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관련 조직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산업이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고 수가 많은 경우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표본조사기법을 사용하여 신청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① 신청인의 관련 상황, ② 이미 알려진 외국 생산업자, 수출업자 및 국내 수입업자 정보, ③ 동종제품의 생산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설명, ④ 수입제품의 수량 및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⑤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등이다. 또한 신청인은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그리고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별첨해야 한다.

2) 조사 개시

상무부는 신청서 및 관련 증거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조사 개시 공고 이전에 해당 수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조사에 응하는 이해당사자는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에 응소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여기서 이해당

사자는 조사 신청인, 이미 알려진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수출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을 통칭한다.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은 통상적으로 조사 개시 전의 3~5년이다. 덤핑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하되,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무부는 질의서, 표본추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이해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하고 논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공된다.

3) 1심 판정 및 잠정반덤핑조치

WTO 반덤핑협정은 예비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을 따른다. 중국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1심 판정까지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1심에 대한 규정은 반덤핑조례와 산업피해조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상무부는 1심 판정결과를 공고해야 하는데, 판정결과 덤핑으로 인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잠정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반덤핑조치에는 잠정반덤핑관세 부과와 현금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잠정반덤핑조치는 조사 개시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부과하지 못한다. 잠정반덤핑조치의 시행기한은 잠정반덤핑조치 결정 공고에서 규정한 일자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덤핑가격약속규칙 제3조에 의하여 1심 판정 공고 후 45일 이내에 조사대상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는 가격약속을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고, 상무부는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가격약속을 권고할 수 있다. 1심 판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지기 전에 가격약속을 권고하거나 가격약속 요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가격약속은 반덤핑조사에 대한 중지 또는 종결 결정 공고일로부터

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한편 상무부는 1심 판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덤핑 및 덤핑마진 산정시 근거한 기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이해관계자는 공고 및 통보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 10일 내에 상무부에 서면 논평을 제출해야 한다.

4) 본조사

(가) 덤핑조사

조사 개시의 결정은 상무부 수출입 공평국에서 공고하며 신청인, 알고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 수출국(지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 조직들과 개인에게 통지한다. 조사기관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논거 제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조사 진행시 이해관계 당사자는 상황을 반영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비밀 성격을 띠지 않는 부분의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반덤핑조례 제6조는 덤핑마진 계산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① 가중평균가격 비교 방식, ② 개별거래가격 비교 방식, ③ 가중평균가격과 개별수출가격 비교 방식이 그것이다. 가중평균가격 비교 방식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의 가중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다. 개별거래가격 비교 방식은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중평균가격과 개별수출가격 비교 방식은 수출가격이 구매자, 구매지역, 구매기간별로 큰 차이가 있어 앞의 두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나) 피해조사

반덤핑조례 제8조는 덤핑이 국내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판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① 덤핑수입의 수량, ② 덤핑수입품의 가격, ③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 요소 및 지표에 미치는 영향, ④ 수출자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및 재고 현황, ⑤ 국내산업의 피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피해 조사방식에 대한 규정은 반덤핑조례 제24조부터 30조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상무부는 산업피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 표본추출, 증언청취, 기술감정,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 「반덤핑조사설문조사규칙」에 따라 설문답변 제출기한을 발송일로부터 37일 이내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무부의 동의하에 14일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표본추출규칙」에서는 표본추출조사를 수출업자·생산업자의 표본조사, 상품유형의 표본조사, 거래의 표본조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본 추출시 확보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출방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수출물량에 따라 조사 표본을 선택하되 선택된 조사표본은 대표성을 지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현장조사규칙」에 따르면 반덤핑조사과정에서 업무인력을 해당 수출국에 파견하여 관련 수출업자와 생산업자가 제출한 정보 및 자료의 사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완전성을 확인·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공청회를 열 수 있다. 반덤핑 공청회 규칙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개최요구 신청서를 서면 제출하고 상무부는 15일 이내에 개최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상무부는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10일간의 반론기한을 두고 최종판정시 근거로 한 기본 사실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사 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는 반덤핑조치를 취함으로써 종료된다. 부정판정의 경우 이미 부과된 잠정반덤핑관세, 예치된 현금보증금은 환급되어야 하

며, 은행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는 해제되어야 한다. 가격약속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건의하고 이 건의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면 그 내용을 상무부가 공고해야 한다. 반덤핑관세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최종판정 결정 공고일 이후에 수입한 제품에 적용된다.

6) 반덤핑조치 종료 및 재심사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와 덤핑과 피해의 계속적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과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성에 대한 중간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1년이 경과된 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¹⁷⁾ 재심절차는 반덤핑조치의 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재심기한은 재심 개시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일몰재심

일몰재심은 반덤핑조치를 시행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반덤핑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나 산업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판정해서 반덤핑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규정에는 일몰재심에 관한 규정이 반덤핑조례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

17) 「덤핑 및 덤핑마진 중간재심규칙」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이 반덤핑조치 이후 변화된 사실에 비추어 반덤핑조치를 원래의 형태와 수준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반덤핑조치가 유효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재심을 중간재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18) WTO 반덤핑협정은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된 이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WTO 반덤핑협정 제11조).

고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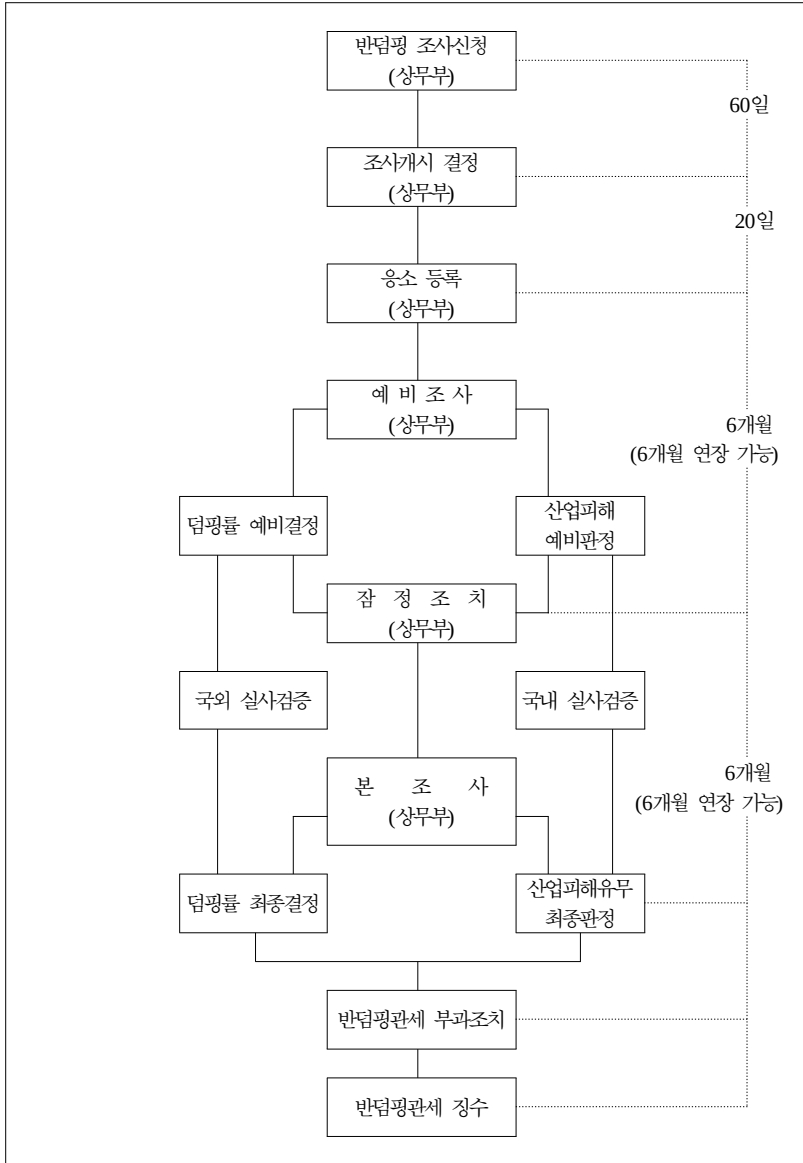
일몰재심과 관련된 판정²⁰⁾을 보면 상무부는 덤핑의 계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덤핑마진의 존재 여부와 수출국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운휴 생산능력, 가동률, 조사대상국내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반덤핑조치 종료 이후 중국으로의 대량수출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며 제3국에 대한 저가수출 여부를 조사하여 조사대상 수출기업의 저가전략 여부도 고려하였다. 또한 산업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부와 이후의 국내 산업 피해지표를 조사하였으며, 반덤핑조치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미래 중국내 수급 예상, 시장공급량, 수입량, 명목소비량, 가격 예상)을 조사해서 판정했다. 일몰재심 과정에서도 이용 가능한 사실을 활용한 판정이 내려진다.²¹⁾

19) 반덤핑세의 징수기한 및 가격약속의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재심을 거쳐, 반덤핑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가 계속적으로 또는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할 경우 반덤핑세의 징수기한은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반덤핑조례 제48조).

20) 중국에서 일몰재심과 관련한 최초의 판정은 신문용지 건으로 반덤핑조치 종료 1년 전인 2003년에 일몰재심이 개시되었고 2004년 일몰재심 최종판정에서 5년간의 반덤핑조치 연장을 결정하였다.

21) 신문용지 건의 경우 중국산업에 의해 신청된 일몰재심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의 피소국은 응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상무부는 일몰재심의 판정을 제소자인 중국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였다.

■ 그림 3-2. 중국 반덤핑조사 절차 ■



자료: 이승영(2004).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WTO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1997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이하 반덤핑조례)로 새롭게 개정하고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구(舊) 조례의 내용을 크게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반덤핑제도 운영시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본 절에서는 반덤핑조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개념의 정의 관련

1) 정상가격의 기준

덤핑사실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수입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WTO 반덤핑협정 제2조는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가 미만의 판매는 비정상거래로 취급하여 정상가격 산정에서 관행상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강문성 외 2003). 판매가격이 평균비용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가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생산자가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정상거래 예외의 기준을 총비용이 아닌 가변비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Ahn 2002).

2) 덤핑마진 산정

WTO 반덤핑협정 제2조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거래단계, 거래시기, 판매조건의 차이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례는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기술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법은 WTO 반덤핑협정이 허용하는 내용이나 덤핑마진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²²⁾

22) Ahn(2002)은 각각의 거래에서는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다 하더라도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덤핑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밝히고 있다.

3)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수입과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시 조사대상 시점에 덤핑 이외 국내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요소들로서 덤핑이 아닌 수입의 수량 및 가격, 수요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생산성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는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례는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4) 국내산업의 정의

반덤핑조례 제11조는 국내 생산자가 수출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 자체가 덤핑수입품의 수입업자일 경우 국내산업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반덤핑협정의 관련자 개념처럼 구체적으로 그 예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WTO 반덤핑협정은 ‘관련되어 있음’을 ① 관련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② 양측이 함께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 의해 통제받거나, ③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여타 독립적 생산자와 상이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심하거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반덤핑조례는 지역산업 인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WTO 반덤핑협정이 용인하는 것으로 영토가 넓어 특정지역에 한해 산업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는 중국으로서는 활용가치가 큰 조항이라 할 수 있다(최원목 2005).

나. 조사절차 관련

1) 조사 개시

반덤핑조례 제13조는 제소자 신청자격으로 중국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산업을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자회사의 모기업에도 제소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ang 2002).

반덤핑조례 제16조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내용 및 증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결정 전에 관련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제로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야 신청접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은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절차 개시 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여 가급적 조기통보를 유도하고 있다.

상무부가 조사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는 ①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② 덤핑, 피해 또는 이들 간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③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④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⑤ 상무부가 반덤핑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제품의 수입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일 경우 경미한 수입량으로 판정하여 조사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WTO 반덤핑협정과 달리, 반덤핑조례는 경미한 수입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2) 반덤핑조치

중국은 가격약속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WTO 반덤핑협

정의 가격약속에 관한 규정들을 기초로 결정 기준 및 절차적 사항들을 상세하게 추가한 것이다.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수출자가 너무 많아 가격약속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일반 정책적인 사유를 포함한 기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가격약속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거부이유에 대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있다.

『반덤핑가격약속규칙』은 가격약속의 집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공이익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가격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이익을 이유로 한 가격약속의 취소 여지를 마련해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문성 외 2003). 또한 이 규칙은 가격약속 위반의 경우 최종판정에서 산정된 반덤핑관세가 예비판정에서 산정된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해당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최원목 2005).²³⁾

WTO 반덤핑협정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적절하다면 덤핑마진보다 작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미과세원칙(lesser duty rule)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 반덤핑조례는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반덤핑관세는 최종판결에서 확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서 반덤핑조례는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제9조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① 조

23) 반덤핑조례 제43조; WTO 반덤핑협정 제10조.

사대상 수출자에게 부과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② 조사대상 수출자의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의 수출가격 간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재심

WTO 반덤핑협정은 재심을 개최할 경우 반덤핑조치의 만료가 덤핑 및 피해의 계속이나 재발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있음을 판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피해 발생 개연성의 입증책임이 조사당국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덤핑 및 덤핑마진 중간재심규칙」은 재심신청의 요건으로 신청자에게 각종 판매자료, 수출자료, 덤핑마진 산정자료 및 덤핑마진 산정의 예비결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 협정상 당국의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최원목 2005).

다. 사법심사제도

사법심사제도는 무역구제조치의 이해당사자에게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무역구제조치라는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WTO 협정의 준수를 담보하며 국내법 관련 규정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사법행위이다(김철 2004).

중국은 대외무역법에서 대외무역 종사자들의 포괄적인 사법심사 제소권을 규정하고²⁴⁾ 반덤핑조례에서 반덤핑조치의 사법심사에 대한 법원의 수리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반덤핑조례 제53조에 따르면 최종판정에 불복하거나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결정, 그리고 소급부과, 세금반환,

24) 대외무역법 제66조.

신규수출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行政復議)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미국, EU 등은 중국의 사법심사제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의 담당법관의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에 대한 의문이다. 담당법관은 무역구제 관련 국내법뿐만 아니라 WTO 규정 등 국제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영어실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아직은 그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심사 관련 법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이다. 비록 실체법으로서의 반덤핑조례와 행정소송법 및 사법해석 등의 절차법으로 사법심사 관련 법체계를 형성하였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원이 사법심사를 진행할 경우, 정부 행정행위의 사실문제 판단과 법률문제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근거로 하고 국무원 주관부서에서 제정한 부문규장을 참조한다.²⁵⁾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법률은 대외무역법이 있으나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에서 실체법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인 반덤핑조례이다. 따라서 보다 권위적이고 상위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무원에서 제정한 반덤핑조례와 상무부에서 제정한 산업피해조사규정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로서 그 효력과 권위성에 큰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최송자 2006).²⁶⁾

25) 법적 효력에 따른 중국의 법원(法源) 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정하는 헌법 →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 → 국무원 각 부서에서 제정하는 부문규장(예: 상무부의 반덤핑 관련 시행세칙).

26) 한 예로서 피해의 개념과 국내산업에 대한 규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개념정의 등은 반덤핑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규정이 없거나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오히려 산업피해조사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셋째, 사법심사의 효율성·투명성과 관련하여 WTO 협정은 사법심사절차에서 불합리한 시효와 무한정 지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행정소송법은 재판시한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재판사례를 보면 규정된 시한을 무한정 연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법심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²⁷⁾

반덤핑에 관한 국제법규는 WTO 반덤핑협정이며 그 국내적인 이행을 위한 규범으로서 WTO 회원국들은 반덤핑 관련 국내법을 시행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국 국내 법규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관련 법규와 WTO 반덤핑협정과와의 합치 여부를 주요 쟁점별로 검토하고 이를 표로 정리한다(표 4-1).

가. 국내산업의 범위

WTO 반덤핑협정은 국내산업을 “수입제품과 동종상품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그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생산자”라고 정의한다. 이때 ‘주요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의 법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50% 초과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에서 반덤핑 프렌즈

27) 본 절은 최원목(2005)을 참조하였다.

표 4-1.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주요 쟁점	한 국	중 국	WTO
국내산업의 범위	· 별도 언급 없음.	·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 물품 전체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생산자	· 국내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생산자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 사유	· 미소 마진 또는 경미 수입량의 경우 조사 신청 기각 가능 · 청원자격 불충족 또는 불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시 조사신청 기각 가능	· 미소 마진은 의무적 종료사유이나 경미 수입량에 대한 규정 없음.	· 미소 마진 또는 경미 수입량의 경우 의무적 종료 · 청원자격 불충족 또는 불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시 조사신청 의무적 기각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 가중산술평균방식	· 가중평균가격 비교, 개별거래가격 비교, 가중 평균정상가격과 개별 거래수출가격 비교 · 가중 평균정상가격과 개별거래수출가격 비교의 경우 이의 제기 측의 입증 책임	· 가중평균가격 비교, 개별거래가격 비교, 가중 평균정상가격과 개별 거래수출가격 비교 · 가중 평균정상가격과 개별거래수출가격 비교의 경우 조사당국의 입증 책임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 약속 위반의 경우 반덤핑관세와 잠정관세 간의 차액을 징수하지 않음.	· 약속 위반의 경우 반덤핑관세와 잠정관세 간의 차액 징수	· 약속 위반의 경우 반덤핑관세와 잠정관세 간의 차액을 징수하지 않음.
재심	·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재심 신청 가능 · 재심에 대한 원심 준용규정 거의 없음.	·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재심 신청 가능 · 재심 관련 원심규정 준용	· 합리적인 기간 경과 이후 재심 신청 가능 · 재심에 대한 원심 준용규정 거의 없음.
보복조치	· 차별적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가능	· 차별적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 가능	

그룹은 ‘주요 부분’에 대한 개념을 50%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히 해야 신청 자격과 피해판정 및 조치 부과에서 일관된 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DDA 협상으로 WTO 반덤핑협정이 개정될 경우 한국도 50%

기준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의 개념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사당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국내산업의 개념에 수출자나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자신인 경우를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은 ‘관련되어 있음’을 정의하는 데 요건을 제시하고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국내생산자를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⁸⁾ 중국은 “당해 수입품의 수출자나 수입자와 관련된 국내 생산자 또는 그 자신이 수입자인 국내 생산자는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된 국내 생산자 및 수입자인 국내 생산자를 국내산업 개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되어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된 생산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WTO 반덤핑협정과 상이하게 내릴 수 있다. 한국은 WTO 반덤핑협정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관련된 생산자(‘특수관계’)를 정의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사 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WTO 반덤핑협정의 의무적 조사 종료사유로는 미소 마진(2% 미만)이거나 경미 수입량(3% 미만)일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미 수입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은 신청자의 청원자격 불충족이나 덤핑과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위 경우에 대하여 조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당국에 재량

28) WTO 반덤핑협정 각주 11) 참고.

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소 마진과 경미 수입량의 경우 한국의 법규는 조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하나 WTO 반덤핑협정과 중국의 법규에서는 기각사유는 아니지만 예비판정 이후 의무적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직권조사 개시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증거 심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법규는 주무부처로부터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무역위원회가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 WTO 반덤핑협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WTO 반덤핑협정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방식으로 양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가격 간 상호 비교하거나 개별 거래별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단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 간의 비교방식이 채택된 경우 조사당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곤란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법규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 가격간의 비교방식을 채택한 경우 조사당국에 입증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비교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이 곤란한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가중산술평균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타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WTO 반덤핑협정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시기와 단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고려요소를 나열하고 있으며 거래통화전환 및 환율 변동요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적당히 고려한다”는 규정만 두었을 뿐 요인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DDA 협상에서 반덤핑 프레임그룹은 공정비교를 위하

여 더욱 상세한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WTO 반덤핑협정은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 적용 이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 협정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이 약정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기업이 가격약속을 위반하여 조사절차를 재개하고 반덤핑조치 최종판정을 내렸을 경우 산정된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한다. 한국은 가격약속 위반의 경우 잠정조치가 취해진 기간 동안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일반적인 소급원칙에 따라 최종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마. 재심

WTO 반덤핑협정은 중간재심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이 자체적으로 재심을 개최할 수 있고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재심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중간재심 관련 규정은 대체로 WTO 반덤핑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재심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반덤핑협정의 ‘합리적인 기간’을 1년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사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만 재심에 적용된다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을 뿐 기타 반덤핑조사

규정들의 재심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어 회원국들은 재심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재심 관련 상세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반덤핑조사 관련 규정들을 재심과정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몰재심에 관한 절차규정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바. 보복조치

중국의 반덤핑조례는 “외국이 중국상품에 대해 차별적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적 반덤핑조치’의 개념과 ‘상응하는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조사 신청자가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만 조사 신청을 할 경우 차별적 반덤핑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 경우 신청자 선택의 결과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차별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중국이 취하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는 WTO 반덤핑협정에 합치하는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WTO 체제는 상대국의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도 교역상대국이 ①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 협정 등에 규정된 한국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② 기타 한 국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국제기구와의 사전협의절차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최근 방한한 중국 총리는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경제 및 무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국은 이미 2005년부터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및 사례와 중국의 대 한국 반덤핑 규제 증가원인을 분석하였다. 2006년 말까지 한국은 중국에 대해 총 37건의 반덤핑조치를 실시하였고, 현재 9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총 28건의 반덤핑조치를 실시하였고 현재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에 있는 건수는 21건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규제 증가원인은 양국 산업구조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제도에 관련한 법적 근거 및 담당기관과 반덤핑조사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51~56조이다. 중국의

반덤핑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법, 반덤핑조례와 11개의 시행규칙이며 담당기관은 상무부이다. 양국의 반덤핑제도 모두 WTO 반덤핑협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4장에서는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WTO 반덤핑협정의 기본 골격을 수용하여 내용을 크게 보완했으나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최근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미국, EU 등은 중국의 반덤핑 관련 규정의 투명성과 조사당국의 판정 능력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을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한 결과 세 규정 모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DDA 반덤핑협정 개정 협상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반덤핑규제를 당하고 있는 한국은 한·중 FTA 협상에서 반덤핑 관련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협상에서 경험하였듯이 반덤핑분야는 협상 주체국의 국내법 개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과이다. 반덤핑 운용의 역사가 100여년 가까이 되는 미국에서는 반덤핑제도가 경쟁력이 약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역할을 공고히 한 반면,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관세 및 각종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안 되었다.

강문성 외(2003)는 FTA를 체결하는 목적이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반덤핑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순찬(2004)은 동북아 FTA가 역내 자유무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덤핑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나 과도기적으로 공동

의 반덤핑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면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하되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보다는 투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반덤핑제도의 역사가 깊은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근래에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인도와 브라질 등 개도국들의 반덤핑제도 운용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의 반덤핑 관련법과 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Han 2003). 중국은 DDA 협상에서도 반덤핑 프렌즈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행 반덤핑협정의 개선을 위한 제안에 종종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공동의 반덤핑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의 반덤핑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상 개시 이전까지 그러한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중국의 반덤핑 관련 규정과 행정시스템에 관한 보다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행정시스템은 WTO 가입 이전의 시스템을 고수한 것으로 WTO 원칙과 위배되거나 무역구제의 특수성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공동의 반덤핑제도 마련이 현실상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양국간 또는 WTO 반덤핑협정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WTO 반덤핑협정과 합치하도록 개선하여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중 FTA 협상에 앞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향후 과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관행을 살펴보는 일이다. 관행은 제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29) 최송자(2006)는 중국 학계가 수년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학계의 연구가 입법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수출자에게는 제도 자체보다도 더 큰 애로사항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한·미 FTA 무역구제협상이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의 관행상 문제점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관행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문성·박순찬·송유철·윤미경·이근. 2003.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민. 2002. 「韓·中 貿易關係의 現況 및 展望」. 『貿易救濟』, 봄號, pp. 144~169. 무역위원회.
- 김 철. 2004. 「貿易救濟措置에 대한 中國의 司法審査制度」. 『貿易救濟』, 여름號, pp. 120~141. 무역위원회.
- 무역위원회. 2002. 『덤핑방지관세제도 개요』.
- _____. 2007.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 박순찬. 2004. 「中國 反덤핑 措置가 貿易에 미치는 影響과 東北亞 FTA에의 示唆點」. 『貿易救濟』, 가을號, pp. 101~127. 무역위원회.
- 심윤수. 2005. 「한중 양국간의 반덤핑제소 현황 및 중국의 대한 반덤핑조사 증가요인 분석」. 『貿易救濟』, 겨울號, pp. 1~24. 무역위원회.
- 이승영. 2004.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반덤핑제도와 대한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근호. 1999. 『한국 반덤핑제도에 대한 고찰』.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최승자. 2006. 『중국 무역구제제도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 최원목. 2005. 「한·중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절차관련 법규의 WTO협정への 合치性」. 『貿易救濟』, 가을號, pp. 28~97. 무역위원회.
- 한국무역협회. 2007. 『최근 중국의 반덤핑 동향과 전망: 한국에 대한 진행상황과

예상을 중심으로』. 북경지부 조사보고서.
_____. 통상·수입규제. <http://antidumping.kita.net/>.

● ● 외국문 자료

Ahn, D. K. 2002. "Comments on Legal Issues for Antidumping Negotiations."

『WTO DDA 제6차 반덤핑 민관합동 대책반 회의』. 산업자원부.

Han, Y. 2003. "Trade Remedy System under WTO: China's Exploration." 『貿易
救濟』, 여름號, pp. 204-235. 무역위원회.

Huang, T. W. 2002. "The Gathering Storm of Antidumping Enforcement in
China." *Journal of World Trade*, 36(2), pp. 255-283.

중국무역구제신식망. <http://www.cacs.gov.cn/DefaultWebApp/CaseSearchRst.jsp>.

부록

1. 한국의 반덤핑 관련 법규

관세법 제51조~제56조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

하며, 덤프방지관세액이 잠정덤프방지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덤프와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프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덤프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54조 (덤프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프와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프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프수출의 중지 등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 (덤프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71조

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 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

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 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⑥ 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 등(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으로 같음한다. <개정 2006. 5. 22>

②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 가능성

- 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 바.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 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아.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2. 조사대상기간
 -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프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프차액 또는 덤프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 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 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 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프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프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

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프차액 또는 덤프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0조제1항과 제61조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게재일부터 18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프방지관세 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제6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3조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 상태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 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재정경제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5조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프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프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프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 관련 비용을 가산한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67조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중에 소급 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8조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⑤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 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 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당해 덤핑 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덤핑

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 ②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61조제6항 및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6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기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 ③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0조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 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 중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판매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②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 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기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 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 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국가 안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⑦ 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 ⑧ 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 ⑨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⑩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⑪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⑫ 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부터 6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영 제59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을 말한다.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개시) ①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의 철회) ①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당해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선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①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판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7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

- ③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 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 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외국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덤핑률} = \frac{\text{조정된 정상가격} - \text{조정된 덤핑가격}}{\text{과세가격}} \times 100$$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

평가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 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 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기타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월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7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준수 여부
3. 기타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2. 중국의 반덤핑 관련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대외무역 질서를 유지 수호하고 공평 경쟁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은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하며 이미 건립된 중국의 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위험을 형성하거나 또는 중국의 산업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실질적인 방해를 초래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반덤핑조치를 실시한다.

제2장 덤핑 및 손해

제3조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에 수입제품을 그 정상가치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 및 확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라고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 수입제품의 정상가치는 상이한 상황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무역 과정에 대비 가능한 가격이 있을 경우 대비 가능한 가격을 정상가치로 한다.
2.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을 수출국(지역) 국내시장의 정상 무역과정에 판매

하지 않았거나 동 동종제품의 가격, 수량에 따라 공평한 비교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동 동종제품을 적합한 제3국(지역)에 수출한 대비 가능한 가격 또는 동 동종제품의 원산국(지역)의 생산원가에 합리한 비용, 이윤을 추가하여 정상가치로 한다.

수입제품이 직접 원산국(지역)에서 수출된 것이 아닐 경우, 이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치를 확정한다. 단 동 수입제품을 독립 매입인에게 판매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입시의 상태로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대외경제무역부의 합리적인 기초에 따라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그 정상가치보다 낮은 폭도를 덤핑폭도로 한다.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치에 대하여, 가격에 영향을주는 여러 가지 대비 가능성 요소를 감안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를 실시해야 한다.

덤핑폭도의 확정은 가중평균 정상가치와 모든 대비 가능한 수출거래의 가중평균가격을 서로 비교하거나 또는 각 거래별로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수출가격은 상이한 매입인, 지역,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두고 있어 이상 조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비교하기는 어렵다. 가중평균 정상가치와 단일한 수출거래의 가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란 덤핑으로 인하여 이미 건립된 중국 국내산업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또는 실질적 손해위험을 형성하거나 또는 중국 국내산

업의 건립에 대하여 실질적 방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에 대한 조사 및 확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한다)가 책임진다. 그 중 농산물의 반덤핑과 관련된 중국 국내산업 손해 조사는 국가경무위와 농업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8조 덤핑이 중국 국내산업에 대하여 초래한 손해를 확정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

1.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 즉 덤핑 수입제품의 절대적 수량 또는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거나 소비의 수량이 대량으로 증가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덤핑 수입제품이 대량 증가할 가능성을 포함한다.
2.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 즉 덤핑 수입제품 가격의 대폭인하 또는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하여 대폭 억제, 인하 등 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다.
3. 덤핑 수입제품이 중국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소 및 지표에 대한 영향
4. 덤핑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피조사 제품의 재고 현황
5. 중국 국내산업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한 기타 요소

질적 손해위험 여부의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다만 고소, 추측 또는 극히 낮은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덤핑이 중국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여부 확정시 긍정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손해를 초래한 비덤핑요소를 덤핑원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덤핑 수입제품이 2개 이상 국가(지역)로부터 수출했으며 동시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덤핑 수입제품이 중국국내 산업에 대하여 초래한 영향에 관련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 국가(지역)에서 수출된 덤핑 수입제품의 덤핑폭도가 2% 이상이며

그 수입량이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량이 아닌 경우

2. 덤프 수입제품 지간 및 덤프 수입제품의 중국국내 동종제품 지간의 경쟁조건에 따라 누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란 1개 국가(지역)에서 수출된 덤프 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 중 차지하는 비례가 3%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단, 3% 이하인 일부분 국가(지역)의 총수입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의 7%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덤프 수입제품의 영향에 대하여 평가시,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을 상대로 단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적 확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중국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가장 적은 제품тип 또는 범위의 생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중국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총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단 중국 국내 생산자가 수출 경영자 또는 수입 경영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그 자체가 덤프 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일 경우 중국 국내산업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상황에서 중국 국내의 하나의 구역시장에서의 생산자는 동 시장에서 그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종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시장에서 동종제품의 시장수요를 주로 중국 국내 기타 지방의 생산자가 공급해 준 것이 아닐 경우 하나의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동종제품이란 덤프 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동일한 제품이

없을 경우 덤핑 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한다.

제3장 반덤핑조사

제13조 중국 국내산업 또는 중국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신청자”라고 통칭한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에 반덤핑조사에 관한 서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자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2. 조사 신청한 수입제품의 완벽한 설명, 즉 제품 명칭, 관련된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출 경영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국내시장에서 소비시 제품의 가격정보, 수출가격정보 등을 포함한다.
3.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설명
4. 조사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량 및 가격이 중국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5. 신청자가 설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내용

제15조 신청서는 다음의 증거를 별첨사항으로 별첨해야 한다.

1. 조사 신청한 수입제품에 덤핑현상이 존재
2. 중국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3. 덤핑과 손해 지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

제16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의 접수일부 터 60일 이내에 중국 국내산업 또는 중국 국내산업을 대표한 자가 그 신청을 제출한 것인지의 여부, 신청서 내용 및 그 별첨한 증거에 대하여 심

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입안(立案)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입안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지지 또는 신청에 대하여 반대를 나타내는 중국 국내 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중국 국내산업 또는 중국 국내산업을 대표한 자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며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지지하는 중국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중국 국내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 반덤핑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특별상황에서 대외경제무역부가 반덤핑조사의 서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덤핑과 손해 및 양자 기간에 원인·결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조사기관이라고 통칭한다.

제19조 입안조사의 결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고를 하며 신청자, 이미 파악한 수출 경영자 및 수입 경영자, 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이하 “이해관계 측”이라 통칭한다)에게 통보한다. 입안조사의 결정을 공고한 후 대외경제무역부는 신청서 원본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출국(지역)의 정부에 제공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조사기관은 설문조사, 샘플링, 공청회, 현장조사 등 방식으로 이해관

계측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이해관계측에 의견 및 논거의 진술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무원을 관련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련 국가(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1조 조사기관이 조사 실시시 이해관계측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측이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적합한 시간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에 대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경우 조사기관은 이미 획득한 사실 및 획득 가능한 가장 좋은 정보에 근거하여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22조 이해관계측은 그 제공한 자료가 누설된 후 심각한 불리한 영향을 일으킨다고 인정될 경우 동 자료를 비밀유지 자료로 처리하도록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정당한 이유로 비밀유지 신청을 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 자료로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동 자료의 개요(비밀유지가 요구되지 않는)를 제공해줄 것을 이해관계측에 요구해야 한다.

비밀유지 자료로 처리한 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관계측의 허락이 없이는 누설하지 못한다.

제23조 조사기관은 신청자 및 이해관계측이 본 안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단 비밀유지 자료로 처리된 것은 제외한다.

제24조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 덤핑, 손해에 대하여 1심 판정을 내리며 양자기간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심 판정을 내리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고한다.

제25조 1심 판정을 거쳐 덤핑, 손해 및 양자기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됨을 확정했을 경우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덤핑 및 덤핑 폭도, 손해 및 손해 정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하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고한다.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대외경제무역부는 최종판정시 근거로 한 기본 사실을 모든 이미 파악하고 있는 이해관계측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반덤핑조사는 입안조사 결정을 공고한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별상황이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연기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덤핑조사는 종료해야 하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덤핑, 손해 또는 양자기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덤핑폭도가 2% 이하인 경우
4. 덤핑 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그 손해가 기록이 될

- 요 없을 정도에 속하는 경우
5.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반덤핑조사의 지속적
인 실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 또는 일부분 국가(지역)로부터 수출한 피조사제품이 이상 제2, 3, 4
항의 경우의 1에 속하는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해야
한다.

제4장 반덤핑조치

제1절 잠정반덤핑조치

제28조 1심 판정을 거쳐 덤핑 성립을 확정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중국 국내
산업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할 경우 다음의 잠정반덤핑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잠정반덤핑세를 징수한다.
2. 현금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잠정반덤핑세의 세액 또는 그 제공한 현금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
식의 담보의 금액은 1심 판정을 거쳐 확정된 덤핑폭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잠정반덤핑세의 징수의 경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건의를 제출하며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가 대외경제무역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고한다. 현금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
보의 제공 요구의 경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요구 여부를 결정을 하며 공

고를 한다. 해관은 공고에 규정한 실시일부터 집행한다.

제30조 잠정반덤핑조치의 실시기한은 잠정반덤핑조치 결정 공고 중 규정한 실시일부터 시작하여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별상황의 경우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덤핑 입안조사 결정의 공고일부터 60일까지 잠정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2절 가격 승낙

제31조 반덤핑조사 기간에 수입제품을 덤핑하는 수출경영자는 대외경제무역부에 대하여 가격 변경 또는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가격을 중지한다는 승낙을 해야 한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 승낙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가격 승낙을 하도록 수출경영자를 강박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수출경영자가 가격 승낙을 하지 않거나 가격 승낙의 건의를 접수하지 않아도 반덤핑 안전에 대한 조사 및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경영자가 계속하여 수입제품을 덤핑할 경우 조사기관은 손해위험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큼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대외경제무역부는 수출경영자가 결정한 가격 승낙을 접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반덤핑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잠정반덤핑조치 또는 반덤핑세 징수를 실

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덤핑조사의 중지 또는 종료 결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고한다.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가격 승낙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덤핑 및 덤핑으로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긍정적인 1심 판정을 내리기 전에 가격 승낙을 요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본 조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조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후 수출경영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조사기관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기관은 덤핑과 손해에 대하여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상 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덤핑 또는 손해의 부정판정을 내릴 경우 가격 승낙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덤핑 또는 손해의 긍정판정을 내릴 경우 가격 승낙은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대외경제무역부는 그 가격 승낙을 이행하는 관련 상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수출경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검토를 실시한다.

제36조 수출경영자가 그 가격 승낙을 위반할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는 국가경제무역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조사의 복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획득 가능한 가장 좋은 정보에 따라 잠정반덤핑조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잠정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 전 90일 이내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세를 추종 징수할 수 있다. 단 가격 승낙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절 반덤핑세

제37조 최종판정을 거쳐 덤핑의 성립을 확정하며 이로 인하여 중국 국내산
업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할 경우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반덤핑세의 징수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건의를 제출하며 국무원 관
세 세칙위원회가 대외경제무역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대외경제무
역부에서 공고한다. 해관은 공고에 규정한 실시일부터 집행한다.

제39조 반덤핑세는 최종판정 결정의 공고일 이후 수입한 제품에 적용된다.
단 본 조례의 제36조, 제43조, 제44조 중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반덤핑세의 납세자는 수입제품을 덤핑한 수입경영자이다.

제41조 반덤핑세는 상이한 수출경영자의 덤핑폭도에 따라 각각 확정해야 한
다. 심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경영자의 덤핑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
덤핑세를 징수해야 할 경우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그 적용한 반덤핑세를
확정해야 한다.

제42조 반덤핑세의 세액은 최종판정 결정 중 확정한 덤핑폭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최종판정을 거쳐 실질적 손해가 존재한다고 확정했으며 이 전에 이
미 잠정반덤핑조치를 실시하였을 경우 반덤핑세는 이미 잠정반덤핑조치를
실시한 기간에 대하여 추중 징수한다.

최종판정을 거쳐 확정된 반덤핑세가 이미 지급한 또는 미지급한 잠정반덤핑세이거나 목적 담보를 위해 예측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부분은 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또는 미지급한 잠정반덤핑세이거나 목적 담보를 위해 예측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반환하거나 또는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제44조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잠정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 전 90일 이내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세를 추종 징수할 수 있다. 단 입안조사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1. 덤핑 수입제품이 중국 국내산업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한 덤핑 역사가 있거나 동 제품의 수입 경영자는 수출 경영자가 덤핑을 실시하며 덤핑이 중국 국내산업에 대하여 손해를 초래하게 됨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2. 덤핑 수입제품이 단기אל로 대량 수입되며 곧 실시하게 되는 반덤핑세의 보완효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45조 최종판정을 거쳐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확정했거나 최종판정을 거쳐 반덤핑세의 추종 징수를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징수한 잠정반덤핑세, 이미 받은 현금 보증금은 반환해야 하며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는 해제해야 한다.

제46조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 경영자는 이미 납부한 반덤핑세 세액이 덤핑 폭도를 초과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대외경제무역부에 세금반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심사, 검토를 거친 후 건의를 제출한다.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대외경제무역부의 건의에 따라 세금반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해관에서 집행한다.

제47조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세를 징수한 후 조사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동 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신규 수출 경영자는 반덤핑세를 징수당한 수출 경영자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단독적으로 그 덤핑폭도를 확정할 것을 대외경제무역부에 신청할 수 있다. 대외경제무역부는 이른 시일내에 심사 및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기간에 본 조례의 제28조제1관제2항 중 규정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동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세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반덤핑세와 가격 승낙의 기한 및 재심사

제48조 반덤핑세의 징수기한 및 가격 승낙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재심사를 거쳐 반덤핑세의 징수 종료는 덤핑 및 손해의 계속 발생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반덤핑세의 징수기한은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반덤핑세의 효력 발생 후 대외경제무역부는 국가경제무역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반덤핑세를 징수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을 거쳐 이해관계측의 청구에 따라 또한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관련 증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반덤핑세를 징수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심사(2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 승낙의 효력 발생 후 대외경제무역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가격 승낙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한 합리적인 시간을 거쳐 이해관계측의 청구에 따라 또한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관련 증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

로 가격 승낙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심사(2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 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유, 수정 또는 반덤핑세의 취소 건의를 제출한다.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는 대외경제무역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고한다. 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보유, 수정 또는 가격 승낙 취소의 결정을 내리며 공고를 한다.

제51조 재심사 절차는 본 조례의 반덤핑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심사 기한은 재심사 결정 시작일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2조 재심사 기간에 재심사 절차는 반덤핑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장 부칙

제53조 본 조례의 제25조에 따라 내린 최종판정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본 조례의 제4장에 따라 내린 반덤핑세의 징수 여부 결정 및 추종 징수, 세금반환, 신규 수출경영자에 대한 징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또는 본 조례의 제5장에 따라 내린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 불복 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54조 본 조례에 따라 발표한 공고는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의거, 결과 및 결론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55조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적당한 조치를 실시하여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56조 어떠한 국가(지역)든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하여 일시성 반덤핑조치를 실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동 국가(지역)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 대외경제무역부는 반덤핑과 관련된 대외 협상, 통보 및 분쟁의 해결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8조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관련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수당 조례」 중 반덤핑에 관한 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바람직한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반덤핑조례」(이하 반덤핑조례)에서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반덤핑조례에 의거하여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의 관련 활동을 진행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는 반덤핑 산업피해의 조사 책임을 맡는다. 농산품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피해의 인정

제4조 피해는 덤핑이 기존의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하였거나 혹은 실질적인 손해위험을 발생시켰거나, 혹은 기존의 국내산업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을 가리킨다.

실질적 피해란 국내산업에 이미 조성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를 뜻한다.

실질적인 손해위험이란 국내산업에 대하여 아직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만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 명백하게 예측되는 급박한 상황을 지칭한다.

실질적인 저해란 국내산업에 아직 실질적인 피해 혹은 실질적인 손해 위협이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존립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을 가리킨다.

제5조 덤핑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확정할 경우,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과 덤핑수입제품의 국내 동종제품 가격에의 영향
- (2)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제6조 반덤핑 수입제품의 수량을 심사할 때에는 덤핑 수입제품의 절대수량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는지, 혹은 국내 동종제품 생산 혹은 소비수량이 절대적으로 대량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과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덤핑 수입제품이 대폭으로 가격을 삭감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덤핑 수입제품이 대폭으로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 하락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혹은 매우 심각한 정도로 국내 동종제품의 당연한 가격 상승을 억제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7조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국내산업 상황의 여러 관련 경제적 요인과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되며,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률, 투자수의 상황 혹은 설비이용률에 실제 혹은 잠재적인 하락이 있었는지를 포함하며; 국내가격에 미친 영향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현금 유입, 재고량, 취업인원, 임금, 산업성장, 자금동원 혹은 투자능력 등에 미친 실제 혹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을 심사한다.

제8조 실질적인 피해위협은 명백하게 예견되거나 급박한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실질적인 손해위협에 확정에 대하여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발 사실, 추측 혹은 극소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판정해서는 안된다.

실질 피해위협에의 확정은 아래 요소를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사항 심사가능);

- (1) 수입이 실질적으로 덤핑제품의 수입량을 대폭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 (2) 수출업자가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할 혹은 장래에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능력이 있어서, 수입 회원 시장의 덤핑 수출에 실질적인 증가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밝힌다. 단 이러한 지표를 사용할 때에는 기타 수출시장이 여하 한의 지나친 수출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3)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을 대폭 하락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 (4) 피조사 제품의 재고 현황

제9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저해를 확정할 때는 8조의 요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필요시 추가 조사 가능);

- (1) 국내산업의 성립 혹은 성립계획 상황
- (2) 국내 수요의 증가 상황과 그 영향
- (3)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시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
- (4) 덤핑 수입제품의 후속 생산능력(後續生産能力)과 국내시장의 발전추세

제10조 동종제품이란 덤프 수입제품과 상동하는 제품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덤프 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제품이 동종 제품이 된다.

제11조 동종제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고려한다. 제품의 물리적 특성, 화학성능, 생산설비와 가공, 제품용도, 제품의 대체 가능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 판매채널, 가격 등

제12조 덤프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의 단독적인 범위내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만일 생산 가공, 생산자의 판매 및 이윤 등의 지표에 근거할 경우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과 그 기타 제품의 생산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국내 동종제품내에서 가장 최소 범위의 제품군 혹은 제품범위의 제품 생산으로 수입 덤프제품의 영향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품군 혹은 제품범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국내산업을 확정할 때에는 중국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자 혹은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생산자를 고려한다. 다만 국내 생산자가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그 자신이 덤프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는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앞에서 관련이 있다고 지칭한 것은 그 중 한 당사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한 당사자를 제어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이거나 혹은 쌍방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3자의 제어와 영향을 받거나 혹은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14조 지역산업을 확정할 때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생산자는 해당 지역시장에서 생산하는 동종제품의 전체 혹은 거의 전체를 판매한다
- (2) 해당 지역시장의 수요를 국내 기타 지역범위의 동종제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닐 때
- (3) 기타 요인

제15조 덤핑 수입제품이 두 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고 동시에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산업에 조성한 영향에 대해 누적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1) 매 국가(지역)에서의 덤핑 수입제품의 덤핑마진이 2%보다 크지 않으며, 그 수입량이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정도일 때
- (2) 덤핑 수입제품간 및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에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적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다

앞에서 말한 무시할 수 있는 정도란 각 국가(지역)의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의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보다 낮은 경우이다. 단, 3%보다 낮은 일부 국가(지역)의 총수입량이 동종제품의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누적 평가를 진행할 때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서로 다른 국가(지역)의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지속성과 가능성이 있는지의 상황
- (2) 서로 다른 국가(지역)의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제품간에 대체 가능성 정도, 특정 고객의 수요와 제품품질 등 상관요소를 포함한다.
- (3) 서로 다른 국가(지역)의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 동종제품과 동일 지역

의 시장에서 판매가격, 판매자의 오퍼가격과 실제 원가

- (4) 서로 다른 국가(지역)의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이 상동 혹은 유사한 판매채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시장에서 동시에 출현하였는가의 여부
- (5) 덤핑 수입제품간 그리고 덤핑 수입제품의 국내 동종제품간의 기타 경쟁조건
- (6) 기타 요소

제17조 상무부는 산업피해 조사를 진행할 때, 덤핑 수입제품의 사용자, 소비자 등을 위하여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반덤핑사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기간은 통상 조사개시로부터 3년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장 산업피해조사

제19조 이해관계 당사자가 응소산업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면 반덤핑조사 입안 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에 응소신청을 제출하고 응소 등기를 처리한다; 동시에 산업피해조사 기간내에 응소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재고량 및 설립 및 확장 계획을 제출한다; 중국에 수출한 해당 제품의 수량과 금액; 수입업자의 수입 수량 및 금액 등의 상황

제20조 이해관계 당사자는 아래를 포함한다

- (1) 피조사제품의 외국(지역) 생산자,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 혹은 해당 제품의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산업조직 혹은 기타 조직
- (2) 피조사제품의 원산국(지역), 수출국(지역)의 정부 및 그 대표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 사업자 혹은 해당 제품의 생산자, 사업자의
산업조직 혹은 기타 조직

(4) 기타

제21조 이해관계 당사자가 조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해관계 당사자는 기업 혹은 기타 조직이 되며, 영업허가서 등 등기증명,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을 구비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조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명과 수권위탁서를 구비하고; 위탁법률대리인은 중국 법률사무소 및 중국 변호사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수권위탁서, 법률사무소 영업허가서, 법률 영업증명 등을 구비해야 한다.

제22조 상무부의 반덤핑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은 국내 생산자, 국내 수입업자, 국내 판매자, 국내 최종소비자, 국내 수출사업자, 국내 생산자 등

제23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산업, 회계, 재무, 법률 등 부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제공케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기밀 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상무부는 설문지, 표본추출, 공청, 기술감정, 현장조사 등 조사방식으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제25조 상무부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배포하는 조사설문지는 국내 생산업자 조사설문, 국내 수입업자 조사설문, 국외생산자, 국외수출업자 조사설문 혹은 기타 유형의 조사설문이 있다.

제26조 이해관계 당사자는 설문지의 규정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설문 답신을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설문기한 7일 전에 상무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기간 연장에 동의할 것인지는 상무부가 결정한다.

제27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지조사 전에 해당 조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미리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 이해관계 당사자는 조사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지역)의 동의를 거쳐, 상무부가 인원을 해당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 생산 확장투자, 재고량, 원산 혹은 기업간 관련 관계 등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상무부는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규정에 근거하여 서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하도록 할 수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도 상무부에 먼저 서면 자료를 주동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이해관계 당사자의 요구나 혹은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 응소산업 피해조사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그 제공한 자료와 관련 증거가 기밀 유지가 필요할 경우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상무부에 해당 자료의 비기밀(非機密) 요약본을 제출하거나, 혹은 해당 자료의 기밀 유지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을 따로 제출하도록 한다.

비기밀 요약본과 공개문은 합리적으로 기밀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실질내용을 포함하지 못한 경우 상무부는 관련 내용과 증거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응소산업 피해조사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자료와 관련 증거의 비기밀 개요 혹은 공개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비기밀 요약본 혹은 공개문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상무부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무부는 제공자료가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기밀 신청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산업피해조사 과정에서 응소산업의 피해조사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실질을 반영한 정황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기타 방식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 상무부는 이미 획득한 사실과 획득 가능한 가장 양호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Korea-China FTA: Antidumping

Jione Jung, Hyeri Park, Jina Yeo

Since China promulgated antidumping regulations in 1997, the number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s continued to rise. Among the investigations, Korea is a major antidumping target. As the balanc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s increasingly disproportionate, China has actively utilized antidumping regulations to protect its industries. Korea is very likely to bring antidumping issues to the table once the bilateral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in.

This study analyzes the antidumping laws of Korea and China and compares them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hina's antidumping law is based on the WTO agreement and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however China still lacks transparency in the application of its antidumping regulations; Korea's antidumping law and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lso have their deficienci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rimarily emphasize the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antidumping laws at the negotiation table.

KIEP 발간자료목록 (2006~07. 7)

■ 연구보고서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흥종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Policy Analyses	06-01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 Chang Jae Lee <i>et al.</i> 06-02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 on East Asian Economies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07-03 동북아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외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정책자료	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 이창수 · 김민성 · 윤창인 · 김진오

	06-02 몽골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 정재완·유민우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 신현준 06-04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 여지나 06-05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 정성춘·이형근 06-06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and Doo Yong Yang
■ 지역연구	•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 김세원·박명호·김흥종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알제리·나이지리아/ 박복영·황주성·박철형 •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 Won-hwa Park, Heungchong Kim, and Linda MADUZ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Working Papers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 Zhang Jianping
■ 단행본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자 약력

정지원(鄭智元)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농업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식품자원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jj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Understanding the COMPAS Model: Assumption, Structure,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20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공저, 2006) 외

여지나(呂智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soy@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공저, 2006) 외

박혜리(朴혜리)

한양대학교 경제학사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hr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주요국의 FTA 피해산업 대책-미국TAA, EU구조자금』 (2004)

『유럽구조자금의 운영실태와 한국의 유사제도마련에의 시사점』 (2007)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Korea-China FTA: Antidumping

Jione Jung, Hyeri Park, Jina Yeo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반덤핑조치 등을 통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 통상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서, 한·중 FTA 협상에서 반덤핑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반덤핑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반덤핑제도 및 WTO 반덤핑협정과 비교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 반덤핑 분야의 예상쟁점을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



정가 7,000원